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50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05.10. ~ 2024.05.23.(14일)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정상철	1967.00.20.	0178200274100003765	₩22,302,000	대전광역시 서구 길평길
2	강경자	1956.00.02.	0178200274100002856	₩18,000,000	경북 상주시 청하 2 길
3	유한회사 수정웨딩정보	161514-0001485	0178200274100003748	₩53,100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 동 401-2번지 106호
4	주식회사 큐로보	110111-3433458	0178200274100004273	₩9,169,2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1
5	송승희	1962.00.29.	0178200274100004935	₩22,302,000	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201번길
6	권준일	1981.00.22.	0178220274100001358	₩9,510,480	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
7	주식회사 누리텔	160111-0534902	0178200274100010330	₩5,527,500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, 503 동 405호
8	엄두현	1955.00.02.	0178200274100004959	₩22,302,000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
9	유한회사 지니	161414-0000570	0178200274100003300	₩11,647,800	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 2길 107, 303호
10	김미현	1979.00.29.	0178200274100004964	₩17,700,000	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06번길
11	강정민	1994.00.25.	0178240274100000538	₩3,862,500	전북 익산시 동서로 9길
12	정백진	1965.00.02.	0178200274100003420 0178200274100004898	₩26,250,000 ₩6,637,5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 6길
13	김영희	1967.00.28.	0178200274100004955 0178200274100004977	₩22,302,000 ₩21,24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
14	김낙현	1960.00.16.	0178200274100004954	₩22,302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 1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도수정	1985.00.21.	0178200274100004084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동길
16	송광섭	1972.00.02.	0178200274100004921	₩29,736,000	충남 보령시 대흥로
17	최혜진	1977.00.11.	0178240274100000631 0178220274100001541	₩13,521,890 ₩13,820,400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7 번길
18	김상근	1974.00.02.	0178200274100004953	₩8,850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 17 번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